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7.

발 의 자 : 김태호·엄태영·주호영
강명구·조정훈·조경태
박충권·김성원·유용원
조승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
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
있음.

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
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,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
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(안 제5조
등).

법률 제 호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100분의 3”을 “100분의 5”로 한다.

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
“2026년”을 “2029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
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